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신입학 특별전형 모집요강

2020. 05

2021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의결에 따라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지원서류 제출	2020.07.20.(월) ~ 07.24.(금) 09:00 ~ 17:00	입학관리팀 (입학취업지원관1층)	
지원자격 심사	2020.08.17.(월) ~ 08.21.(금) 09:00 ~ 17:00	입학관리팀	
입학지원서 접수	2020.09.23.(수) ~ 09.28.(월) 09:00 ~ 17:00	입학관리팀	평일 본교 방문접수
전 형 (면접고사)	2020.10.14.(수) 14:00	입학관리팀	면접고사 시간준수
합격자 발표	2020.11.17.(화) 14:00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www.cju.ac.kr
예치금 등록	2020.12.28.(월) ~ 12.30.(수) 09:00 ~ 16:00	지정 등록처	
최종 등록	2021.02.08.(월) ~ 02.10.(수) 09:00 ~ 16:00	지정 등록처	

※ 입학서류 및 입학지원서 제출시 유의 사항

1. 「부모 및 지원자 모두가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은 위 일정에 적용받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기간 평일 우리 대학교 입학관리팀을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접수 가능합니다.
3.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4. 입학서류 및 입학지원서 제출 시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합니다.

2.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 2021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의결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모집인원
비즈니스 대학	인문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38	10이내
			회계학전공		
		글로벌경제통상학부	중국통상·경제학전공	116	10이내
			무역학전공		
		관광호텔경영학부	관광항공경영학전공	106	10이내
			호텔외식경영학전공		
인문 사회 대학	인문	미디어콘텐츠학부	신문방송한국문화전공	180	10이내
			광고홍보문화콘텐츠전공		
	사회과학부	융합실무법학전공	208	10이내	
		정치행정학전공			
		지적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139	10이내	
		영어영문학전공			
		동양어문학전공			
공과 대학	자연	에너지·광기술융합학부	에너지·응용화학전공	123	10이내
			광기술에너지융합전공		
			에너지융합공학전공		
	BT융합학부	바이오산업공학전공	113	10이내	
		제약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소프트웨어융합학부	빅데이터통계학전공	157	10이내	
		인공지능소프트웨어전공			
		디지털보안전공			
	휴먼환경디자인학부	토목환경공학전공	125	10이내	
		조경도시계획전공			
건축학·건축공학전공 [건축학프로그램(5년)] [건축공학프로그램]		73	4이내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모집인원	
공과대학	자연	융합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177	10이내	
			시스템반도체공학전공			
			전기제어전공			
사범대학	인문		국어교육과	38	-	
	자연		수학교육과	38	-	
예술대학	예체능	디자인·조형학부	시각디자인전공	40	4이내	
			공예디자인전공	40	4이내	
			아트앤패션전공	40	4이내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40	4이내	
			산업디자인전공	40	4이내	
			만화애니메이션전공	40	4이내	
		연극영화학부	연출제작전공	46	4이내	
			연기전공	45	4이내	
보건료과학대학	자연		간호학과	95	-	
			치위생학과	40	-	
			방사선학과	30	-	
			물리치료학과	40	-	
			작업치료학과	35	-	
			임상병리학과	40	-	
	인문	보건행정·헬스케어학부	스포츠건강재활전공	90	4이내	
			보건행정학전공			
	직할학부군	자연	항공학부	항공운항학전공	30	-
				항공기계공학전공	40	4이내
항공서비스학전공		50				
무인항공기학전공		40		4이내		
인문		군사학과	40	-		
계				2,632	52명	

- ① 전체 입학정원 2,632명의 2%의 52명 선발하되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함.
단,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입학정원에 제한 없이 선발함.
- ② 「부모 및 지원자 모두가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은 입학정원에 제한없이 선발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자격

1.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1-1. 재외국민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구분	지원자격 대상자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1,095일)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3년	3년	3년	-	3년	3년	3년	3년	
해외근무자(공무원,상사직원,외국정부·국제기구)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기타 재외국민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1,095일)(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예):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등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 주요 해설

■ 지원자격 심사 공통 안내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7호에 적용)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재학기간의 인정 기준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영주기간 :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 해외파견 근무자의 배우자(부 또는 모)에 대한 동반 체류 및 거주 의무 여부, 기간은 자율 설정

■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① 공무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③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1-2.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구분	지원자격	비고
외국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고교 과정을 3년 이상 이수한 외국인(복수국적자 제외)	

☞ 주요 해설

■ 재학기간의 인정 기준

수업 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이수한 '외국의 고등학교과정(3년 전체)'을 의미함
-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보호자 등의 조건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은 학생 본인이 특별전형 자격대상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3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2.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2-1.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구분	지원자격	한국어능력시험(TOPIK)	비고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 나. 우리대학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3급수준)을 통과한 자 다. 일부과정(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 예체능 학과 입학생)의 경우 기준완화 가능	

☞ 주요 해설

■ 전 교육과정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외국에서 이수하여야 함)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보호자 등의 조건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2-2.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구분	지원자격	한국어능력시험(TOPIK)	비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 나. 우리대학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3급 수준)에 통과한 자 다. 일부과정(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 예체능 학과 입학생)의 경우 기준완화 가능	예·체능 계열은 완화

☞ 주요 해설

■ 재학 인정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외국인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복수국적자 제외)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초·중등 12년 동안 해외소재 외국학교와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를 번갈아 가며 재학한 경우는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12년 미만 학제 졸업 인정>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11학년제, 12학년제의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학생·보호자 등의 조건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의 자격 기준은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적 및 해외에서의 거주·체류 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2-3. 북한이탈주민

구분	지원자격	비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98조)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인정 신청을 하여야 함
- 교육감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학력 인정
- 또한, 각 시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98조 1항 3호)
- 관련법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8조의 2(학력심의 위원회의설치 운영 등), 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 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됨

4. 제출서류

■ 공통 사항

- ①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류 발행기관의 "원본 대조필"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 ②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서류는 공증기관이 공증한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 ③ 제출서류상 이름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④ 제출서류 중 공인기관의 공증서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영사)관의 공증을 권장함.
- 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영주교포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학생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⑥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⑦ 출입국사실 증명서(부모, 학생) ⑧ 영주권 사본(부모, 학생) ⑨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모, 학생)	각 1부
해외 파견 근무 재외국민 . 기타 재외국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⑥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⑦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⑧ 여권사본(부, 모, 학생) ⑨ 재외국민등록 등본(부모, 학생) ⑩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 ⑪ 해외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⑫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⑬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각 1부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사실증명서) ⑥ 국적상실 확인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말소 등본 또는 호(제)적 등본) ⑦ 외국국적증명서(학생: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⑧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각 1부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전 교육 과정 이수 재외국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⑥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⑦ 신분증 사본	각1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③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⑥ 외국국적 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사본, 학생 여권사본) ⑦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⑧ 재정보증서류 ⑨ 최종학력인증서	각1부
전 교육 과정 이수 외국인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⑥ 외국국적 증명서(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⑦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⑧ 재정보증서류	각1부
북한이탈 주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③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 학력확인서(교육감이 학력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각1부

5.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가. 평가요소 및 배점

구분	모집단위	선발 모형	사정 비율	전형요소(%)			
				면접 구술	서류 전형	실기	기타 (세부명)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정원 2%이내)	전체모집단위 단, 보건의료과학대학 (보건행정·헬스케어학부 제외), 항공운항학전공, 항공서비스학전공 사범대학, 군사학과 제외)	일괄 합산	100	100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정원 제한없음)			100		100	예체능계열 제외 디자인·조형학부 (시각디자인/ 공예디자인/ 아트앤패션/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산업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전공)	
			100			연극영화학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모집정원 제한없음)			100		100	예체능계열 제외 디자인·조형학부 (시각디자인/ 공예디자인/ 아트앤패션/ 디지털미디어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전공)	
			100			연극영화학부	
북한이탈주민 (모집정원 제한없음)			100	100			

나. 평가 및 선발 방법

- ① 면접고사는 언어구사 능력, 지원전공 이해력, 학업수학 능력,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 평가 등 4개 평가 항목을 직접대면 구술에 의한 수학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함(단, 예체능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간단한 실기 테스트 병행)
- ② 입학성적 총점의 60%(60점)미만을 취득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 ③ 모집인원은 총 52명으로 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성적 총 점 순에 의하여 선발함. 단, 전 모집단위 지원자가 전체 모집인원(52명)을 넘을 경우 각 모 집단위별 입학성적 총점 순에 의해 해당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내에 있는 지원자 전원을 대 상으로 입학성적 총점 순으로 52명을 선발함
- ④ 모집정원에 제한 없는 정원외에 해당하는 지원자(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는 입학성적 총점이 60%(60점) 이상일 경우 전원 선발함
- ⑤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6.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전형료 : 70,000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외의 전형은 별도 모집요강 참조)

7. 지원자 유의사항

- ① 지원 서류가 미비 된 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②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연락사항 발생 시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연락되지 않을 경우 그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함.
- ③ 접수된 서류는 지원 사항을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④ 면접고사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응시 할 수 있음.
- ⑤ 제출서류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와 지원 자격 미달자는 입학 후에도 합격과 입학이 취소 됨.

8. 문의 및 상담

- ①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문의 및 상담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 전화 (043)229-8814

FAX(043)229-8944

주소 우편번호 28503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 ② 「입학정원 2%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문의 및 상담

입학처 입학관리팀 : 전화 (043)229-8033, 8034

FAX(043)229-8037

주소 우편번호 28503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입학처 입학관리팀

홈페이지 : <http://www.cju.ac.kr>

9. 지원서 및 관련서류 출력 안내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 입학안내 → 재외국민·외국인 모집 → 서식파일(첨부서류)